

## 2) 공무상 질병휴직

- 공무상병가(180일) → 일반병가(60일) → 법정연가사용 가능 → 공무상 질병휴직(3년 이내, 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)  
※ 병가·연가 소진 여부와 관계 없이 임용권자의 명령에 따라 질병휴직도 가능함

## 아. 공무상 질병휴직 제도의 운영상 유의 사항(「공무원임용령」 제57조의7)

- 1) 「교육공무원법」 제44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무상 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「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」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(이하 “공무상요양·재요양승인”이라 한다)을 받은 경우와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이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 결정(이하 “요양급여·재요양결정”이라 한다)을 받은 경우로 한정
- 2) 공무상요양·재요양승인이나 요양급여·재요양결정을 받은 기간(연장된 요양 기간을 포함한다)이 끝난 후에는 그 사유와 같은 사유로 공무상 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할 수 없음
- 3) 질병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이나 그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휴직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질병휴직을 취소하고, 그 발령일을 소급하여 공무상 질병휴직을 명하거나 당초의 질병휴직 명령을 공무상 질병휴직 명령으로 변경 가능

## 자. 기타

- 1)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
  - 가) 경력평정: 미산입(공무상 질병인 경우 산입)
  - 나) 호봉승급: 호봉승급 기간에서 제외(공무상 질병인 경우는 포함)
- 2) 결원보충: 결원보충 안함
- 3) 보수
  - 가) 봉급
    - 일반 질병: 1년 이하 - 봉급액의 70% 지급  
1년 초과 2년 이하 - 봉급액의 50% 지급
    - 공무상 질병: 봉급액 전액 지급
  - 나) 수당
    - 〈일반 질병휴직〉
      - 정근수당: 휴직1월에 대하여 ‘수당액 × 1/6’ 감액 지급
      - 정근수당가산금, 가족수당, 자녀학비보조수당은 ‘수당액 × 0.3(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은 0.5)’ 감액 지급
      - 시간외 근무수당: 월중에 휴직발령을 받거나 복직을 할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 지급